

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 번 호	418
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2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- 폐지이유 :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폐지
- 주요골자 :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- ①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 - ②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등록업무 수행이 가능
 - ③ 동업무를 시장, 군수, 출장소장에게 위임
- 폐지근거 : ① 양곡관리법 제19조, 제19조 3항, 양곡관리법 제21조
제1항, 동법시행령 제21조, 제22조
② 양곡관리법 제36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
동법시행령 제35조전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
- 폐지조례안 : 별첨
-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관계법령발췌 : 별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 (충청북도조례
제1086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.